2026. 9. 14.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17	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 번호	4617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6. 9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1. 회부안건

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27일, 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7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 및 심사 · 의결(2026. 9. 14.)

3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교섭단체 대표의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는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. 이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실제 운영과 조례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,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업무추진비의 정의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

○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현아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내역 공개에 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,

○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·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 제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체계상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: 없 음

8. 기타특이사항 : 없 음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”를 “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”로, “위원장의”를 “위원장, 교섭단체 대표의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전광역시 서구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“업무추진비”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장, 부의장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.	1. ---------- 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---------- 위원장,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----------.
2.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	2. ---------- - 의회 ----------.